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제 출 자	고령군수 (재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#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1. . .  
제출자 : 고령군수

## 1. 제안이유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심의의결을 얻어 효율적인 재정운영 도모와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출연기관 : 1개 기관

나. 출연 현황 (최근 5개년)

(단위 : 천원)

연도	2018	2019	2020	2021	2022(계획)
금액	3,260	3,520	3,490	2,992	3,811

다. 세부계획

(단위 : 천원)

연번	기관명	사업명	금액	관련근거	소관부서
1	한국지방세연구원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3,811	지방세기본법 제152조	재무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: 출연 계획 세부 명세서 각 1부. 끝.

# 출연계획 세부 명세서

## 1. 한국지방세연구원

사업명	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		대표자	배진환
추진기관	소재지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		
	설립연도	2011. 02. 28.		
	조직인력	5실, 3센터, 7부 / 65명(정원 92명)		
	주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방세 네트워크 운영</li> <li>○ 지방자치단체 수탁과제 수행</li> <li>○ 지방세공무원 역량강화 교육</li> </ul>		
주관부서	재무과 부과담당			
사업비(출연금)	3,811천원			
출연근거(법적근거)	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			

## 2. 최근 5년간 출연금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2018년	2019	2020년	2021년	2022년
계	3,260	3,520	3,490	2,992	3,811

## 3. 2022년 출연 세부계획

가. 출연기간 : 계속사업(2011년~)

나. 출연규모 : 3,811천원(균비, 법정 출연금)

-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(31,756,145천원)의 1만분의 1.2출연

다. 출연용도 : 지방세의 연구·홍보, 지방세담당 공무원교육, 지방세발전, 등

라. 출연필요성

-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

□ **지방재정법 18조**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[제17조 제2항](#)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**지방세기본법 제151조**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-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-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-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-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□ **지방세기본법 제152조**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□ **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**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-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  - 1. 1만분의 1.2
  -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 -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  -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 -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 -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 -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